

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이용주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2. 3. 21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468호로 2022년 3월 10일 이용주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2022. 1. 13. 시행)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통·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삭제

(안 제4조, 안 제5조제2항~제4항)

나.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사항 삭제(안 제5조의2)

다.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(안 부칙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입법예고(2022. 3. 8. ~ 3. 14.) 결과 : 의견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상위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통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정비하고자 한 조례안임.

### 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2022. 1. 13. 시행) 전부 개정예 따라 통장 임명권이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변경되었으며 통장 임명 내용과 통장추천심의위원회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
- 안 제4조 및 안 제5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 통장 임명 관련 규정과 안 제5조의2의 통장추천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함.
- 조례와 시행규칙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통·반장 임용과 관련하여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부칙에 시행일을 2022년 6월 1일부터로 정하여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보임.

### ○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서 행정동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,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제고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자치법

**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**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[이하 “행정면”(行政面)이라 한다]을 따로 둘 수 있다.

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[이하 “행정동”이라 한다]·리[이하 “행정리”라 한다]를 따로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> 생략

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>

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21. 4. 20.>

## 2 지방자치법 시행령

**제81조(이장 및 통장의 임명)**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

통장을 두고,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·동장이 임명한다.

③ 읍장·면장·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·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